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2016년 9월 2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협회(연맹)라 하고, 영문 명칭은(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Association, Federation(약칭SJOOOA.F)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세종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4조(사업)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목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목 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및 결정
3. 읍·면·동 종목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4. 종목의 읍·면·동 종목단체 및 연맹체 지도 및 지원
5.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종목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종목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8. 종목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9. 종목단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기타 체육활성화 및 종목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사업

제2장 조 직

- 제5조(조직)**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지부(이하“읍·면·동 종목단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읍·면·동 종목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회원종목단체에 관한 읍·면·동 종목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은 이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 ③ 읍·면·동 종목단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④ 회원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전국규모연맹체는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연맹체를 둘 수 있다.
- ⑤ 회원종목단체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가입 및 탈퇴) 회원종목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읍·면·동 종목단체 가입은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종목단체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읍·면·동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정기총회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가 제7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규약 제12조제3항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1호 및 제2항제3항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회원종목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7호에 해당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1. 체육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4. 중앙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6.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지정 시
 7.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중앙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체육회로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③ 관리단체 중 정회원 단체는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 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회원종목단체, 읍·면·동종목단체에 대한 감사·징계)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읍·면·동 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 ② 회원종목단체는 정부기관·대한체육회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을 조

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를 경유하여 정부기관 및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⑤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회원종목단체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② 체육회 평가위원회의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단체로 2회 연속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회원단체를 준회원단체로 강등할 수 있으며, 준회원단체를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11조(대의원) 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 회원종목단체의 장
2. 해당종목 등록 팀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세종특별자치시연맹체의 장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의 대의원 또는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 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4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하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 조직대표 6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체육회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읍·면·동 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 ③ 제28조제7항에 따라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연맹체, 읍·면·동 지부)관계자(등록 팀)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

이 15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연맹체, 읍·면·동지부) . 관계자(등록팀)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5조(의장)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9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0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9. 그 밖에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21조(이사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0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4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5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천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등록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3명~10명
 3. 등록 지도자 3명~10명
 4. 등록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총무(초, 중, 고, 대) 3명~10명
 5. 등록 체육동호인 3명~10명
- ⑤ 회원종목단체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 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 제26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회계 관련업무 경험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의 취임은 회원종목단체 임원 선출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⑥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⑦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9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 ③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중앙 및 지방회원종목 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 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단체(체육회, 중앙 및 지방 회원종목 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시 및 읍·면·동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임원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선출에 관한 후보자 등록 전에 심의하여 예외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기여, 주요 국제.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2. 국제스포츠기구, 중앙종목단체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 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임원심의에 관해서는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제3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또는 세종시장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사람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또는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국회의원, 시의원

-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3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

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때
3. 시 및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읍·면·동 종목단체

제35조(지위 및 명칭) ① 읍·면·동 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읍·면·동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읍·면·동 종목단체는 읍·면·동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읍·면·동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읍·면·동 종목단체는 각 동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임원인준) ① 읍·면·동 종목단체의 임원은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회원종목단체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읍·면·동 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정승인) 읍·면·동 종목단체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부합하는 정관(규약)을 제정하여 읍·면·동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정관(규약)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읍·면·동 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읍·면·동 종목단체의 정관(규약) 및 임원 구성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종목단

체는 정관(규약) 승인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읍·면·동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 체육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읍·면·동 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읍·면·동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읍·면·동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제8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읍·면·동 체육회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읍·면·동 종목단체의 총회) ① 읍·면·동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산하 종목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읍·면·동 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③ 읍·면·동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 ⑤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 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수는 등록선

수 및 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읍·면·동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읍·면·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1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읍·면·동 체육회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42조(총회구성 불가시 대체기관) ① 읍·면·동 종목단체는 산하 지회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 팀 및 동호인 조직 등록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읍·면·동 종목단체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읍·면·동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읍·면·동 종목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 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44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 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 본 규정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46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① 회원종목단체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 ② 회원종목단체의 자산 중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산은 운영재산으로 본다.
-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자원)** 회원종목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시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 제48조(잉여금의 처리)** 회원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 제49조(재산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 ② 회원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51조(회계연도) 회원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4조(회계처리) 회원종목단체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55조(사무국) ① 회원 종목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2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 ⑤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을 중임한 사람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35조,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처장 등 직원(시·도 종목 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6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7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 결의로 해산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회에 귀속하거나 또는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8조(정관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회의 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 ③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사무국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정관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 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세종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세종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제5장28조제4항의 경우 회원종목단체 회계감사 선임은 2020년 12월까지 한하여 행정감사로도 선임 할 수 있다.

⑦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세종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⑧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세종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세종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세종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구)세종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

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 ⑩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제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